

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

1. 적용범위

본 규정은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목적

고객과 이해관계자로부터 품질과 서비스 및 친환경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료, 재무, 인력, 시장리스크와 환경리스크 등 국내외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·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해당사항 없음

4. 책임과 권한

4. 1 위원장

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, 회의를 주관한다.

4. 2 간사

4. 2. 1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.

4. 2. 2 리스크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그 활동을 관리한다.

5. 절차개요

해당사항 없음.

6. 절차

6. 1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

6. 2. 1 경영리스크 이슈사항 협의

6. 2. 2 리스크관리에 관한 대응방안 수립

6. 2. 3 해당 리스크의 부서별 업무 분담

6. 2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

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, 위원은 각 본부장, 관련부서 팀장으로 하며, 간사는 기획팀장이 한다.

6. 3 리스크관리 기준

6. 3. 1 연료리스크

유연탄 탄종별 국제 수급동향 및 가격변동이 심할 때

6. 3. 2 재무리스크

국, 내외 자금시장 동향, 금리변동, 환율추이, 매출채권이 급증할 때

6. 3. 3 인력리스크

정년퇴직을 감안한 적정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

6. 3. 4 시장리스크

수요트렌드, 대체제 동향, 가격 및 점유율의 변화가 급변할 때

6. 3. 5 설비, 기술리스크

설비대체 및 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할 때

6. 3. 6 환경리스크

환경법규의 제·개정, 기후변화협약 체결, 환경 민원 및 사고가 발생할 때

6. 4 리스크관리 운영 절차

6. 4. 1 리스크 식별

리스크관리 기준 관련 팀장은 해당 리스크에 대하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게 문서 및 구두로 보고하면,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6. 4. 2 리스크 평가

위원회가 소집되면 리스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 후 리스크 여부를 평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장은 해당 팀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통보한다.

6. 4. 3 대응방안 수립

(1) 대응방안 수립 팀장은 해당 리스크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, 리스크에 대한 동향 및 원인을 파악한다.

(2) 당사에서 동향 및 원인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및 가능한 업체에게 원인파악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.

(2) 해당 리스크에 대한 시장 동향 및 원인분석 자료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.

6. 4. 4 보고

대응방안 수립 팀장은 리스크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결과, 대응방안 등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
6. 4. 5 부서별 업무분담

(1)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역할을 전달받은 해당팀은 대응방안을 근거로 리스크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책을 실행한다.

(2) 발견된 리스크와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재무팀 및 내부통제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활용한다.

7. 기록

기 록 명	양 식 번 호	보관기간	보존기간	보관팀
1.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	ASG-AF-30500-01	1	5	해당팀

8. 관련문서

없음